

검 토 보 고 서

2010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— 재무과

(2010. 4. 16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금길]

1. 안 건 명

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4월 6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2010년 4월 9일

4. 근거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제1항 제6호 및 같은법

시행령 제36조(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)제 1항

나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및 같은법

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(공유재산

관리계획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)

라.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

(서울특별시 재무과-31368호, 2009. 7. 3)

4. 주요내용

□ 매수대상 현황

구 분	세 부 내 용
대 상	마포구 성산동 451번지 소재의 토지
면 적	330㎡ (100평), 지목 / 대지
소 유 자	서울특별시
토지이용계획	제3종 일반주거지역, 일반미관지구
사 용 용 도	게이트볼 장
건폐율 및 용적율	50% / 250%

□ 소요 예산

○ 토지 매입비 예정 금액 - 21억 2,784만원

- 공시지가 산정 : 13억 2990만원

. 산출기초 <4,030,000원(㎡당) × 330㎡ = 1,329,900,000원>

- 시가 예정 금액 : 2,127,840,000원(공시지가의 1.6배 정도)

- 최종매수금액 :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
가격으로 결정

- 예산확보 방안 - 2010년도 제2회 추경반영 예정

□ 추진 현황

- 2008. 7. 9 : 구청장 성산2동 주민센터 방문 시 동청사 확충관련
게이트볼 장으로 이전가능여부 검토 지시
- 2008. 9. 4 ~ 2008.10. 8 : 성산2동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
시유재산 매각가능 문의에 대한 매각 불가 회신
- 2010. 3. 4 : 구청장, 시장 면담 시 부지매입 건의 후 매각에
대한 긍정적 검토의견(서울특별시 재무과)

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

-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36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, 「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- 주요내용은 성산2동 주민센터가 협소하여 별도의 성산2동 자치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 330㎡ (100평)을 21억 2,784만원의 사업비로 매입하여 지상 5층 (1층 - 주차장, 2층-품앗이 육아방, 3층-컴퓨터교실, 4층과5층 - 주민자치프로그램실(예정)으로 신축하여 주민의 문화. 복지 생활교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임.
- 현 성산2동 주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연면적 약 444평이며 1층 - 민원실, 2층 - 작은 도서관 및 다목적실, 3층 - 강당, 지하 체력단련실 및 동대본부로서 인구 4만 여 명 중 자치회관 수강은 24개 프로그램에 월 296명, 작은 도서관은 회원 4,100명에 1일 300여명, 각 종 민원처리는 월 9,000여건을 상회하고 있어 공간 협소로 인하여 내방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.